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6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윤준병·안호영·김윤
서삼석·서미화·박용갑
부승찬·박민규·임호선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하는 현행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리청항만 개발사업과 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일관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민간제안 사업계획 평가 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

이 없어 취득토지의 100%까지 제3자에게 분양 가능하여, 민간개발사업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인 물류기업 유치 및 활성화보다 분양 수익 창출에만 집중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며, 총사업비의 범률 근거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총사업비”란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조사비, 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변경”을 “변경(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공모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거나 제2항에 따라 공모로 제출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공모에 응모한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 또는 공모자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통보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2. 총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3.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4.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적정성
 5.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등의 적정성
 6.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와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의 적정성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51조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7호 중 “조성토지”를 “조성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국가가 취득한”을 “국가에 귀속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가격 산정은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임대 또는 양도

2. 제66조에 따라 지정된 1종 향만배후단지관리기관에 대한 양도

제62조제1항 중 “토지”를 “토지(제61조제1항에 따라 매도를 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토지 중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4의2.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명령으로 한정한다)

7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9.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명령으로 한정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을 “승인,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제10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로 한다.

2.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제108조제2호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를 “제50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의 지정
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2항 또는 제5
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1조제3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 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공모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
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
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
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
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
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
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
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

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
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
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
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거나 제2항에 따라
공모로 제출받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
획을 제안한 자 또는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계획 공모에 응모
한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

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과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 또는 공모자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통보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2. 총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3.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4.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적정성

5.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등의 적정성

6.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 하는 토지를 포함한

다)와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의 적정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제51
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인이 취소된 경우

3. 제51조제7항에 따른 기간 내
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
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
심의회가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
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
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6. (생략)
-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 7. 조성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
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
한다.

<신 설>

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착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⑧ -----제7항-----

-----.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

-----국가에 귀속되는-----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
자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취득 목
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
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
시행자는 향만배후단지개발사
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
를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
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
에 대한 임대 또는 양도

2. 제66조에 따라 지정된 1종
향만배후단지관리기관에 대한
양도

③ -----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로 취득
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가격 산정은 제74조제3항을 준
용한다.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

-----토지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도를
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포함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토지 중 100분의 40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

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삭 제>

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
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
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
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
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
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
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지정

마.·바. (생략)

2.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신설>

라.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
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명령으
로 한정한다)

5.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8. (현행과 같음)

9.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
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
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각

②·③ (생략)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명령으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

 -----승인,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1. ~ 3. (현행과 같음)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

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
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
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 라. (생략)

<신설>

2.·3. (생략)

② ~ ④ (생략)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
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
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
소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p>3. (생략)</p> <p>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u>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u>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시계획 승인의 취소</p> <p>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제50조제1항에 따른</u> <u>사업시행자의 지정</u>을 받은 자</p> <p><신설></p> <p>3. ~ 5. (생략)</p>	<p><u>취소</u></p> <p>3. (현행과 같음)</p> <p>4. ----- ----- ----- ----- -----<u>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u> <u>계획 승인의 취소</u>----- -----</p> <p>제108조(벌칙)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50조제3항에 따른</u> <u>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u> <u>예정자의 지정</u>을 받은 자</p> <p>2의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u> <u>방법으로 제50조의2제2항 또</u> <u>는 제5항에 따른 항만배후단</u> <u>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u> <u>변경승인</u>을 받은 자</p> <p>3. ~ 5. (현행과 같음)</p>
---	--